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26 International Summer Seminar 요지

2026. 7. 31.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연구원 김보민

I. 세미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년 7월 23일 15:00
- 장소: 특허법원 5층 대회의실 (온라인 Zoom 동시 개최)

2. 발표·진행·토론자 및 참석자

■ 발표자

- 피터 토호터만(Peter Tochtermann) 교수,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분원(Mannheim Division)의 재판장
- 에르덴치메그 다쉬푼차그(Erdenechimeg Dashpuntsag, Chingee) 몽골 사법연수정보원장, 국제센터 방문연구원
- 콕재우 변호사, Kipla 정책연구용역 책임, 법무법인 광장

■ 진행자 및 토론자

- 1세션: 권보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법관 연구위원(진행자), Kipla 강기중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윤선영 변리사
- 2세션: 김영기 고법판사(재판장)·선임연구위원(진행자), Chingee 원장, 국제센터 인턴 Sungjun Lee, Yubi Na, Nathania How
- 3세션: 김기수 고법판사(재판장)·법관연구위원(진행자),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연구위원, 권민재 성남지원 판사·법관연구위원

■ 참석자

- 한규현 특허법원장·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장
- 정택수 특허법원 수석판사·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수석부장
- 권동주 kipla 회장
-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 정태호 비상임연구위원·경기대학교 교수
- 특허법원 법관 및 직원
- KDI School에 재학 중인 IP 전공 외국 변호사 및 대학원생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전문가

3. 세션 소개

- 제1세션 - 최근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결 사례와 실무 동향
: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분원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에서의 FRAND 항변, 글로벌 실시료 결정 및 UPC의 사건관리 방식을 소개함.
- 제2세션 - 몽골의 사법제도와 지식재산재판 현황 및 특허법원의 국제교류
: 몽골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분쟁해결 구조, 주요 상표 판례 및 집행상의 문제를 소개하고, 한국의 지식재산 사법체제와 비교하여 몽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제3세션 - 해외 주요 법원(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소송절차 규정 분석 및 우리 지재소송절차에의 시사점
: 한국, 미국, UPC 및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의 지식재산 소송 현황과 사건관리 방식을 비교하고, 국내 절차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함.

II. 세미나 주요 내용

1. 제1세션: 최근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결 사례와 실무 동향

가. 주요 발표 내용

■ Panasonic v. Oppo 사건(UPC_CFI_210/2023, 2024. 11. 22. 선고)

- SEP에 기초한 금지명령의 비례성은 원칙적으로 FRAND 항변의 심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별도의 사정이 제출되지 않는 한 독립된 비례성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유럽특허는 구체수단이 손해배상에 한정되는 특허가 아니며, SEP 역시 금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
- FRAND 항변은 실시자의 라이선스 취득 의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SEP 권리자의 제안을 우선 검토한 뒤 협상 전 과정에서 나타난 양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SEP 권리자에게 투명성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시자도 권리자가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이용 규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함.
- 이 사건에서는 실시자가 과거 이용 규모를 공개하거나 관련 수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FRAND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InterDigital v. Amazon 사건(UPC_CFI_936/2025, 2025. 9. 30. 결정)

- 영국 법원에 청구된 임시 라이선스가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청구를 막고, 특허권자를 사실상 영국 법원의 글로벌 실시료 결정 절차에 따르게 하는 효과를 갖는지가 문제 됨.
- UPC는 임시 라이선스가 다른 국가에서의 금지명령 청구를 저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이용하여 UPC에서의 특허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인정함.

- UPC는 해당 조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였으며, 판단 과정에서 영국 법원의 관련 심리기록도 검토함.
- 이러한 판단은 임시 라이선스뿐 아니라 UPC 제소를 계약 위반이나 법정모독의 근거로 삼는 등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갖는 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 InterDigital v. Disney 사건(UPC_CFI_86/2025, 2026. 6. 16. 선고)

- 영상 스트리밍 분야의 HEVC 관련 특허가 SEP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임.
- HEVC 표준은 디코딩 절차를 규정하지만 인코딩 절차는 기술규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인코딩 방법과 그에 따라 인코딩된 영상 신호에 관한 해당 특허청구항은 HEVC 기술규격의 일부가 아니며 FRAND 선언의 적용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실시자들은 해당 기술이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 설령 Huawei/ZTE 판결의 FRAND 협상 법리를 사실상 표준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시자 측이 비밀유지계약을 근거로 라이선스 제안의 공개를 막으면서 FRAND 항변을 제기한 것은 자기모순적인 행위라고 판단함.
- 특허권자가 비밀유지계약의 관련 조항을 배제하여 라이선스 제안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실시자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됨.

■ FRAND 실시료 결정 절차

- FRAND 실시료를 직접 산정하는 경우 침해·유효성 등 기술적 쟁점은 1일, FRAND 항변 및 실시료 산정 쟁점은 3일 동안 구분하여 심리하고, 당사자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전문가를 출석시키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재판부가 당사자와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고 상대방 대리인의 질문도 허용하되, 미국식 반대신문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주요 서면을 소송 초기에 제출하는 프론트로딩 절차(front-loaded procedure)를 운영하며, 이후 중간절차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쟁점을 분리하여 전문가 결정이나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함.

나.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

■ UPC의 글로벌 FRAND 실시료 결정 역할

- UPC가 글로벌 FRAND 실시료 결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비회원국 특허가 포함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됨.
- 만하임分院은 원칙적으로 FRAND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판단 범위는 당사자의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함. 지금까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실시료를 산정하기보다 당사자가 제시한 조건의 FRAND 부합 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설명함.
- 글로벌 라이선스를 기본 전제로 삼을 수 있지만, 유럽특허에 관한 UPC 판결은 UPC 계약회원국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글로벌 실시료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비회원국에서 집행하는 데에는 각국 법질서와 국제조약의 부재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 글로벌 라이선스에서도 지역별 제품 가격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상이한 실시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국 법원의 실시료 판단은 직접적인 구속력과 별개로 실제 협상에서 참고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임시 라이선스 관련 금지명령(anti-interim licence injunction)과 영국 법원의 관계

- 임시 라이선스를 저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릴 때 고려할 요소와 영국 법원과 UPC 간 관할권 충돌이 논의됨.
- 영국의 최신 판례와 법리 변화를 계속 검토해야 하며, 최근 영국 항소법원이 1심법원의 임시 라이선스 결정을 뒤집고 당사자들이 중재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향후 영국의 판례와 실무 변화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양 법원이 상대 관할권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보다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함.

■ 당사자의 협상행위와 라이선스 취득 의사

- UPC가 진정한 라이선스 취득 의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시됨.
-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 제공과 제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 등 소송 전후의 전체 협상행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협상행위에 비추어 명백히 라이선스 취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실시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최종 실시료를 산정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쟁점이라고 언급함.

■ 기술판사(technically qualified judge)의 역할

- 기술판사가 복잡한 특허사건에서 법률판사(legally qualified judge)와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시됨.
- 기술판사는 합의 전 기술적 쟁점에 관한 서면 의견을 작성하고, 법률 판사들은 이를 각자의 검토 결과와 비교하여 합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함.
- 우선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이해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문제에 관하여 변론 전이나 도중에도 기술적 의문에 답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의 정확성과 품질을 높인다고 평가함.

2. 제2세션: 몽골의 사법제도와 지식재산재판 현황 및 특허법원의 국제교류

가. 특별 강연 내용

■ 몽골 지식재산권 제도 및 분쟁해결 구조

- 몽골의 지식재산 행정은 1944년 국가계획부 산하 State Commission for New Initiatives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한 이후 1993년 특허법 제정과 1997년 파리협약 및 WTO/TRIPS 체제 편입을 거쳐 발전해옴.
- 최근에는 몽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Mongolia, IPOM)을 중심으로

로 온라인 출원, 정보공개 및 침해신고 등 지식재산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식재산 행정기관의 집행 보고서(administrative enforcement report)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며,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상표 출원이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제 지식재산 소송도 상표의 식별력·침해 및 부정경쟁에 관한 사건이 주를 이룸.
- 산업재산권분쟁해결위원회(Industri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Board)는 소수 전 단계에서 이의신청과 무효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1심)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에서는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행정절차가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법원이나 검찰 등 관할기관으로 이관되고 있음.

■ 몽골의 지식재산 재판구조와 집행상 한계

- 지식재산 사건은 행정·민사·형사절차로 구분됨.
 - ◆ 행정소송은 몽골 지식재산청이나 국가검사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담당함.
 - ◆ 민사소송은 사인 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분쟁을 처리함.
 - ◆ 형사절차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침해행위에 적용됨.
- 몽골에는 통일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손해액 산정 기준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형사책임에 필요한 손해액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 몽골 대법원의 주요 상표 판례

- 몽골 대법원은 상표사건에서 본질적 식별력, 혼동가능성 및 외관의 유사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정립함.

- ‘BAZALIT’ 사건에서는 해당 명칭이 상품의 종류나 지리적 출처를 직접 나타내지 않는 창작된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함.
- Nyam-Osor v. IPOM 사건에서는 문자 체계가 다르더라도 표장의 발음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혼동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한국과 몽골의 제도 비교 및 개선 방향

- 몽골은 일반법원과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은 전문법원과 기술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사건을 심리한다는 차이가 있음.
- 몽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됨.
 -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손해액 산정 지침 마련
 - ◆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도 검토
 - ◆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와 전문법관 양성
 - ◆ 장기적인 전문 항소심 체계 구축
 - ◆ WIPO 및 한국 특허법원과의 연수·인적 교류 확대

나. 강연에 관한 질의응답

■ 산업재산권분쟁해결위원회 처리사건 수 감소 원인

-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자와 일반인의 인식 향상으로 분쟁 자체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회에 법관이나 충분한 수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권리자의 신뢰가 낮은 점도 원인으로 제시함.

■ 형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 의약품이나 식품에 관한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됨.
- 이러한 행위는 권리자의 재산권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식품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큼.
- 그러나 손해액 산정 기준이 없어 법정 손해액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로 검찰이 형사사건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함.



■ 한국과 몽골 제도의 차이 및 몽골의 당면 과제

- 한국 특허법원은 국제사건을 처리하고 외국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 몽골 법원은 원칙적으로 몽골어에 의존함.
- 한국에서는 기술심리관 등 기술전문인력이 복잡한 기술적 쟁점의 심리를 지원하지만, 몽골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면서도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 몽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식재산 손해액 산정 지침의 마련과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함.

다. 특허법원의 국제교류에 관한 토론

■ 방문연구위원 프로그램(Visiting Scholar Program)에 관한 논의

- Chimgee 원장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방문연구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밝힘.
- 체류 기간 한국 사법부의 높은 전문성과 특허법원의 기술심리·조사관 활용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함.
- 방문연구의 목적은 개인적인 연구를 넘어 양국 사법기관 간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인적 교류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힘.
- 향후 몽골 법관(대법관)의 특허법원 방문과 국제회의의 참여 등을 추진하여 양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특히 올해 가을에 ‘몽골 대법관’ 이 특허법원 국제센터에서 방문 연구위원으로 연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음.

■ 해외 로스쿨 재학생들의 방문연구 프로그램(인턴십)에 관한 논의

- 국제센터 인턴(Sungjun Lee, Yubi Na, Nathania How)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비교법 연구 기회를 주요 지원 동기로 제시함.
- Sungjun Lee 인턴은 인도 법원의 존 도우 명령(John Doe Order) 및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Dynamic+ Injunction), Yubi Na 인턴은 UPC·영국·독일 법원의 SEP 실시료 산정 분쟁, Nathania How 인턴은 IPSCO(IP Office of Singapore)-WIPO 연



계 조정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커뮤니티에 게시할 예정임을 밝힘.

■ 국제교류활동의 의의 및 개선방향

- 서로 다른 국가와 교육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함께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의 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됨.
- 다만 인턴십에 대한 모집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외 대학과 로스쿨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방문연구위원과 해외 인턴이 국제센터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은 국제센터가 여러 국가의 법률가와 공동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교류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3. 제3세션: 해외 주요법원(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소송절차 규정 분석 및 우리 지재소송절차에의 시사점

가. 주요 발표 내용

■ 국내외 지식재산 소송 현황

- 특허법원은 최근 4년간 매년 400건 이상의 지식재산 본안사건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약 260~280일임.
- 전체 사건의 75% 이상이 1년 이내에 처리되고 2024년 상고심 파기율은 3.2%로, 신속성과 판결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외 주요 법원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향후 과제는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사건별 편차를 줄이고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미국에서는 매년 약 3,000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지만, 실제 배심재판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약 1~2%에 불과하고 대부분 합의·취하·각하 등으로 종결됨.

- 2022~2024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종결사건의 처리기간 중앙값은 208일이었으나,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의 중앙값은 1,040일로 약 3년에 달함. 전체 종결기간 통계는 조기에 종결된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출범 후 2024년까지 처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UPC의 평균 처리기간은 침해소송 약 405일, 무효소송 약 383일이며, 12~14개월의 처리 목표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
- SICC는 특허전문법원은 아니지만 국제 기술·상사분쟁을 대상으로 사건별 맞춤형 절차와 높은 국제적 접근성을 제공함.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2020년 6월 1일 기준 본안(Trial)까지 진행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6.5개월로 제시됨.

■ 미국 연방법원의 사건관리 방식

- 미국 특허소송에는 연방민사소송규칙과 연방증거규칙 외에도 관할 법원이 채택한 Patent Local Rules와 담당 법관의 Standing Order가 적용될 수 있음.
- 사건 초기부터 침해·무효주장서를 교환하여 쟁점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Markman Hearing에서 청구항의 의미를 확정함.
- Docket Control Order를 통해 증거개시, 청구항 해석, 공판 전 회의 및 배심원 선정까지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함.
- 절차 위반이나 증거개시의무 불이행 등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사건관리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 UPC와 SICC의 사건관리 방식

- UPC는 주요 주장과 증거를 소송 초기에 제출하는 프론트로딩(front-loading) 방식과 엄격한 기한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심리를 도모함. 정당한 사유가 없는 뒤늦은 주장과 증거 제출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술심리는 원칙적으로 1일 이내에 마치도록 함.
- SICC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사건별 절차를 설계하고, 분쟁의 특성에 맞춘 제한적인 증거개시와 다양한 심리방식을 활용함. 일정한 역외사건에서는 외국 변호사의 대리가 허용되며, 긴급한 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절차명령과 제재의 중요성

- 해외 법원의 공통점은 소송 초기에 쟁점을 구체화하고 기한을 명확히 하며, 사건관리명령 위반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임.
- 절차의 예측가능성은 세밀한 규칙뿐 아니라 재판부의 적극적인 사건관리, 일관된 집행 및 적절한 제재가 함께 이루어질 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함.

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국내 표준심리절차의 효과와 보완점

- 표준심리절차가 실제 소송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얼마나 높이고 있으며, 보완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제시됨.
- 서면 제출기한과 분량, 증거신청 및 변론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대리인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다만 상대방이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식재산 소송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엄격한 사건관리 규칙의 필요성과 한계

- 사건관리 규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실무상 어려움은 무엇인지가 논의됨.
-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적시제출주의 등 관련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적용요건과 충실한 심리를 중시하는 국내 소송문화로 인해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함.
- 당사자들은 엄격한 기준 자체보다, 사건이나 당사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더욱 불안하게 여기므로 명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하급심에서 절차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뒤늦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을 제한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제출을 다시 허용한다면 사건관리의 실효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됨.

■ 사건관리 규칙 마련에 관한 논의

- 사건관리 규칙을 민사소송 전반의 일반규정으로 마련할지, 지식재산 소송에 한정된

특칙으로 마련할지가 논의됨.

- 일반규정은 소송실무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식재산 소송에 한정된 특칙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기본적인 원칙과 제재 근거는 일반 민사절차에 두되,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방식은 지식재산 사건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우선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에서 미국의 Standing Order와 유사한 절차를 운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됨.

■ 서울고등법원의 지식재산 사건과 표준심리절차

- 서울고등법원의 지식재산 사건 현황과 별도의 표준심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시됨.
- 지식재산 사건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 민사사건이 증가하여 전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 전담 비율이 높지 않고 사건유형도 다양하고 비정형적이므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지식재산 표준심리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토론자가 제시하였으나, 방청석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절차에 대한 평가

- 항소심의 관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식재산 소송 심리절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시됨.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침해금지청구의 작성 방식 및 사건유형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향후 개정 시 강화된 사건관리 방식과 침해 여부·손해액 산정을 구분하는 단계적 심리방식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이를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국 법원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재판지로 선택되기 위한 과제

- 한국 법원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에서 보다 선호되는 재판지가 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논의됨.
- 외국어 사용 허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측가능성, 접근성, 전문성 및 판결의 집행가능성을 갖추는 한편, 한국의 국제재판제도와 운영 현황을 해외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소스코드와 영업비밀 등 민감한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절차와 긴급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구제·집행절차를 마련한다면 한국 법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함.

4.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제1세션에서는 SEP 분쟁에서 FRAND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시료의 적정성이나 형식적인 라이선스 취득 의사뿐 아니라 **정보 제공 여부와 제안에 대한 대응 등 협상 전 과정에서 나타난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 제2세션에서는 전문법원과 기술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지식재산 사법체계가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방문연구위원 및 해외 인턴과의 교류는 국제센터가 비교법 연구와 국제적 인적 교류 중심의 글로벌 연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제3세션에서는 국내 지식재산 소송의 향후 과제로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이를 위해 현행 표준심리절차를 토대로 미국의 정형화된 일정관리, UPC의 엄격한 기한관리, SICC의 절차적 유연성을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명확한 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적절한 제재를 통해 사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됨.
- 특허법원은 신속성과 전문성 및 국제적 교류 기반을 바탕으로 IP Hub Court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꾸준히 마련해 온 것으로 평가됨. 향후 절차의 예측가능성, 비밀보호,



긴급구제 및 국제적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중심
재판지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